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령에
이에 공포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 3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집단 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동일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별로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부대시설) 법 제 3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자동차 정류소.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 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 4 조 (복리시설) 법 제 3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2. 공동저수 시설.
3.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4. 공원 또는 녹지시설.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 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 5 조 (주택건설종합계획)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 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현황.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3. 익년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택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대한주택공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 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 2 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내무부장관.
2. 재무부장관.
3. 농수산부장관.
4. 상공부장관.
5. 보건사회부장관.
6. 대통령경제제 1 수석비서관.
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8. 대한주택공사사장.
9. 한국주택은행장.
10.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자 4 인이내.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 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 1 항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예산국장.
2.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3. 재무부 이재국장.
4. 농수산부 농업경제국장.
5. 상공부 공업단지국장.
6.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7. 체신부 계획국장.
8. 대통령비서실 경제담당비서관.
9.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 2 행정조정관.
10.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11. 한국주택은행 전무이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13. 기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인 이내.

제 7 조 (주택조사) ①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③ 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 8 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의 범위는 연간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업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1조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부장관이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한 익년도 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매년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필건설계획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법 제 12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등)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매월별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승인 등) ① 한국 주택은행이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 발행방법·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발행 총액과 매출 기간 및 제 16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6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2퍼센트 이하로 하되,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①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한국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할 수 없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매입자가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제 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제 3 항 단서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공사도급허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사무를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민주택채권의 등기) ① 한국주택은행은 매년 당해 연도의 국민주택채권발행총액 및 제 16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6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등기는 익년에 따라 1년분을 본점 소재

지에서는 50일 이내에, 지점 및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등기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농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1 개의 관할등기소가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또는 수개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우에는 그중 본점이나 1 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가 일괄하여 등기한다.

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 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규정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5호 단서, 제13조, 제28조 및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여유자금은 그 운용기관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특별시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날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개발사업의 명칭.

2. 위치(구역).

3. 면적.

4. 계획의 개요.

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 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아파트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 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격이 1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사채발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③ 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 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 - 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 또는 주선기관명.
15.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납입금의 사용) ① 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 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 사채발행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 등) ① 법제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2.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3.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②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호에서 "연립주택"이라 함은 각 세대마

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일구조체로서 2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제 1항 제 3호에서 "아파트"라 함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건물 배치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닥면적이 그 이하인 때에도 이를 아파트로 본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 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은 제30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공급 비율이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적용 한다.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대지만을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규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에 정하는 서류(도시계획법 제 2조 제 1항 제 7호에 규정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가 법 제3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처·청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 4항의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 중 제35조의 규정

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도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도 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의 전부를 소유(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따로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 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4호 및 제 5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2조 제 4항의 규정은 제 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 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등) ①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 7조 및 제 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그 건설을 위하여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는 간선시설을 법 제3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준공전까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법 제3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간선시설설치요구가 있을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간선시설설치비 보상) ① 제3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기간은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내로 한다.

② 사업주체가 그의 우선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보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징수하여 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 연 10분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주택의 관리) ① 법 제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범위·절차및 방법.
2. 관리비의 산정기준.
3. 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체는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주택관리인) 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기준 및 관리방법과 시기 등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면허를 받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한다)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① 주택자재의 면허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 와 같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수수료로서 1 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제한) 법 제41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주택자재 검사기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행할 자는 국립건설연구소, 지방공산품검사소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2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③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 32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시범주택의 건설)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건축사 중에서 입회인 또는 감리자를 정하여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제44조 (감독) 시장·군수가 법 제4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 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말소에 관한 권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내에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한(다만, 국가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과 법 제41조 제 1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가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 1일에 법 제2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③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등록업자등록기준

구 분	기 준
자 본	2,000만원 이상(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5,000만원 이상)
기 술	건축분야 기술자 1 인이상
사무실	33m ² 이상
전 화	1 대 이상

- 가. 자본금은 지정신청공고일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 나.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 공고일 현재의 실적을 말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건축허가불 포함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의 공정이 20%이상 진척되고 분양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은 합산할 수 없다.
- 라. 기술능력은 지정신청공고일 현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별표 2]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1. 건설업법상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서 울 · 부 산 지 역	기 타 지 역
자 본 금	5억원 이상 (다만,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합계 150호(또는 세대)이상 900호(또는 세대) 미만이거나 3년간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합계 500호(또는 세대)이상 3,000호(또는 세대) 미만인 경우 및 일단지 내에 1,0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억 5천만원 이상 (다만,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합계 80호(또는 세대)이상 450호(또는 세대)미만이거나 3년간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합계 250호(또는 세대)이상 1,500호(또는 세대) 미만인 경우 및 일단지내에 5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건설실적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급실적이 300호(또는 세대)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1,000호(또는 세대)이상일 것.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공급실적이 150호(또는 세대)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공사 도급실적이 500호(또는 세대)이상일 것.
기술 능력	○ 토목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분야 기술자: 4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전기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건축사: 1인 이상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기사 1급에 한한다) ○ 건축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전기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 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상기 1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 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한다)
- 라. 금융기관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어민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 조합의 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 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어업자금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때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	귀금속 점포 영업허가						100,000
2.	업종 소지자 허가						30,000
3.	사행행위 허가						
	가. 복표발행 (현상을 포함한다)						500,000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 판매업 허가(도매업)						100,000
5.	주류 제조업 면허						300,000
6.	수렵 면허						
	가. 갑종 면허						5,000
	나. 을종 면허						100,000
7.	특정 외래품 판매업 허가						50,000
8.	건축허가(대수선 허가를 제외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 (1973. 2. 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 이후 1975. 12. 4. 이전에 건축허가 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전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 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 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1) 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1,000	
	(2)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132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4,000
	공동주택					"	3,000
	(3)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7,000
	공동주택					"	6,000
	(4)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23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단독주택					"	15,000
	공동주택					"	12,000
	(5) 연면적 231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30,000
	(6)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50,000
	(7)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80,000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다만, 읍급 이하의 지역과 공업단지 및 공업 배치법상 유치지역 내에서 신, 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 극장, 영화관, 뽀, 카바레,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연면적 3.3평방미터당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12,0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4,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3,000
다.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2,0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500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나목을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9. 건설업 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가. 일반공사업	
나. 특수공사업	"
다. 단종공사업	"
10. 해외 건설업 면허	" 1/1,000
11.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가. 시멘트 가공제품 생산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50,000
(3) 기타지역	30,000
나. 기타 생산업	100,000
12.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13. 중기 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4. 중기 사업신규 허가	
가. 대여업	
(1) 종합중기 대여업	200,000
(2) 단종중기 대여업	100,000
나. 정비업	
(1) 종합중기 정비업	100,000
(2) 부분중기 정비업	50,000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6. 측량업 등록	50,000
17. 건축사 사무소 등록	
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나. 각 도청 소재지	50,000
다. 기타 지역	30,000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8. 식품영업허가	700,000
가. 유흥전문음식점영업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 소재지	300,000
(3) 기타 지역	100,000
다. 대중음식점 영업(특수 유흥음식점 영업, 전문음식점 영업 및 휴게실 영업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 지역	70,000
라. 과자점, 다방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0
(2) 각 도청 소재지	200,000
(3) 기타지역	100,000
마. 유제품, 마아가린 및 쇼트닝유, 식유제품, 통조림, 청량음료 및 당류 제조업허가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기타 지역	100,000
19. 숙박영업 허가	
가. 호텔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 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나. 여관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 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다. 여인숙 영업(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70,000
(2) 각 도청 소재지	50,000
(3) 기타 지역	30,000
20. 유기장업 허가	
가. 당구장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도청 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나.	기	원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	
(3)	기타 지역					10,000	
다.	골프장					5,000,000	
라.	골프연습장						
	옥 외					200,000	
	옥 내					100,000	
마.	볼링장					1,000,000	
21.	목욕탕업 허가						
가.	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0	
(2)	각 도청소재지					700,000	
(3)	기타 지역					500,000	
나.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22.	전화가설 허가						
가.	9급지 이상 자동구역			대	당	12,000	
나.	6급지 이상 8급지 자동구역			"		6,000	
다.	가입전신, 가입승락(텔레кс)			"		24,000	
23.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1)	주거전용 건축물						
	건축물(토자포함)의 과세표준세액이			과	세	표	준
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 / 1,000	
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335 / 1,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30 / 1,000	
	기타 지역			"		30 / 1,000	
다)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40 / 1,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40 / 1,000	
	기타 지역			"		35 / 1,000	
라)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 / 1,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 / 1,000	
	기타 지역			"		45 / 1,000	
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60 / 1,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60 / 1,000	
	기타 지역			"		55 / 1,000	

매 입	매 상	매 입	금 액
바)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70/ 1,000
(2)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과세표준액이)		"	65/ 1,000
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지역		"	25/ 1,000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20/ 1,000
다)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40/ 1,000
라) 상속 보존 과세표준액이		"	35/ 1,000
(1)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50/ 1,000
(2)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45/ 1,000
(3)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25/ 1,000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저당권 설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20/ 1,000
		"	40/ 1,000
		"	35/ 1,000
		"	60/ 1,000
		"	55/ 1,000
			과세표준액의
			저당권 설정금액의
			10/ 1,000
			5/ 1,000
			다만, 매입금액은 5,000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4.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가. 특급차(수입가격 500만원 이상의 차이거나 배기량 2,500cc이상의 차)		대당	2,300,000
나. 고급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		"	1,000,000
다. 일반차(군장관급 장교와 국방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9호봉 내지 15호봉)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			
(1) 갑종(배기량 1,500cc이상의 차)		대당	700,000
(2) 을종(배기량 1,000cc이상의 차)		"	250,000
(3) 병종(배기량 1,000cc미만의 차)		대당	200,000
라. 소형차(절, 퍼브리카)		대당	120,000
25.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또는 대여사업 면허			50,000
26. 자동차 정비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신규허가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가. 정비사업의 신규허가(1급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기타지역	50,000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신규허가	100,000
27. 해외건설공사 도급 허가(계약이 체결된 자에 한한다)	도급계약금액의 1/10,000
28. 법인 설립 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 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별표 4]

주택 자재의 면허품목

품 목	품 명	비 고
벽 돌	소성 벽돌	
	시멘트 벽돌	
	고압 벽돌	
	토공 벽돌	
블 록	연탄재 벽돌	
	소성 블록	
	시멘트 블록	
	고압 블록	
관 재	토공 블록	
	연탄재 블록	
	P. C 관	
	시멘트 기와	
기 와	토공 기와	
	연탄재 기와	
	스레트 기와	
	창 호	목재 창호
콘크리트 창호		
알루미늄 창호		
철제 창호		
합성수지 창호		

[별표 5]

주택 자재생산업면허기준

업 종 별	면 허 기 준
1. 점토소성제품 (소성벽돌, 소성블록) 생산업	(1) 배합 및 토련시설 1식
	(2) 소성 시설 1식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 벽돌: 시멘트블록, 시멘트 기와) 생산업	(1)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2) 양생 시설 1식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P.C 판 생산업	(1) 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장치 1식
	(2) 반송 시설 1식
	(3) 증기 양생시설 1식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창호제품 (창과 창틀, 문과 문틀) 생산업	(1) 건조 및 양생시설 1식
	(2)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3) 가공 및 조립시설 1식
	(4) 절단 및 압축시설 1식
	(5) 압출 및 성형시설 1식
	(6)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다.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인
-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 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은 법인과 의료보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 (4)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 기업체
- (5) 언론기관
- (6) 경제개발 계획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용 시설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자
- (7)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합병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다.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높은 기준 매입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되 낮은 기준매입액을 먼저 매입하였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농일사업 또는 농일복적불일 것.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동일인 일것.

마.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어서는 별지부표 제 13호·제 18호 내지 제 21호 및 제 24호 내지 제 2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가 해당액의 지하철 건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발행 지방공채를 매입하는 때에는 해당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라”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업 종 별	면 허 기 준
5. 교압 벽돌 제품 (교압벽돌, 교압블록) 생산업	(1) 혼합시설 1식
	(2) 교압성형시설 1식
	(3) 증기양생시설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6. 토공 제품(토공벽돌, 토공블록, 토공기와) 생산업	(1)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연탄재 가공 제품(연탄재 벽돌, 연탄재블록, 연탄재 기와) 생산업	(1) 분쇄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혼합시설 1식
	(4) 증기시설 1식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8. 스투트기와 제품생산업	(1) 배합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압축시설 1식
	(4) 건조시설 1식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